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.

□ 2006년 1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, 「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

- 시·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(보정정원)이 재산정 고시 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206, '05. 12. 21)됨에 따라 표준 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

□ 주요 내용은,

-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와 제2항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간, 지역 교육청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의 정원을 2,985명을 3,072명으로 8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공무원 표준정원(보정정원)이 재산정 고시됨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증원하는 것으로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먼저 2006~2007년 학교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이 일반직 23명, 기능직 24명

《학교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현황》

년도	학교명	학급수	일반직	기능직	계	비고
2006	비봉초	30		1	1	
2007	원현초	30	2	3	5	
	샛별초	30	2	3	5	
	운동중	24	2	2	4	
	송절중	24	2	2	4	
	장전초	30	2	3	5	
	원현중	24	2	2	4	
	장전중	24	2	2	4	
	송절고	30	3	2	5	
	산남고	30	3	2	5	
	목령고	24	3	2	5	
합계	11개교		23	24	47	

-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설치에 따른 일반직 22명 증원
 - 각 지역교육청별 : 일반직 2명(6급 1명, 7급 1명)
-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원지원인력 18명 증원으로
- 학교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의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
 - 지역교육청별의 혁신업무인력 증원의 필요성
 -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원지원인력은 그 증원 인력의 필요성, 소요인력수, 배치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